

10. 住宅建設基準等に 關한 規定 및 規則(案)

立法豫告 1990. 6. 1 公告

1. 制定취지 및 방향

－ 법령체계의 정비

- 제반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주민의 공동이용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게 함.

나. 주차시설 설치기준의 강화

- 차량증가 추세 및 주차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시설의 설치기준을 상향조정 함.

바. 기타 미비사항의 확충·보완

-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설치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진입도로기준에 따른 택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함.
- 단지내의 주택동호수 및 제반편의시설의 식별·이용이 용이하도록 단지내 시설표지 및 안내표지체계를 보완 함.
-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(안)

가. 임대주택건설기준의 특례마련

- 영구임대주택·근로자주택등에 대하여는 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탁아소등 별도의 필요시설

을 설치하도록 함.

나. 대지조성기준 설정

- 대지조성시 확보하여야 하는 진입도로·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정함.

다. 주요 주택자재의 품질관리 개선

- 주요 주택자재생산업자의 자체품질관리 기준과 주요 주택자재에 대한 품질검사기준 및 검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우량주택자재의 인정기준과 심사절차등을 정함.

3. 의견제출

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
· 현재 여러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제규정을 통합·정비하여, 주택건설촉진법을 모법으로 하는 “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” 및 “동규칙(건설부령)”으로 단일 법령 체계화

－ 기준내용의 보완·개선

- 현행 제기준에 누락·미비사항을 확충·

보완하여 주택건설에 관한 전반적인
기준의 체계를 정립

2. 주요내용

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(안)

가. 주택단지내에 필요한 부대·복리시설
의 완비·판매시설·생활시설·주민운동
시설등 일상주거생활에 필요한 제반편
익시설을 공동주택단지내에 완비할 수
있도록 함.

나. 복합건물 허용범위의 확대

·토지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택과
부대·복리시설의 복합건축허용범위를
개방하며, 특히 상업지역 및 폭12미터
이상의 도로변에는 제반 편의시설은
물론 당해지역·지구에 허용되는 제용
도와의 복합건축을 모두 허용함.

다. 지구상세계획도에 의한 개발 촉진

·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·도시설계등 지
구상세계획에 의한 주택건설개발계획
에 따라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건
설기준을 융통성있게 적용함으로써,
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다양성있는 주
택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.

라. 공동주택 지하층의 활용성 제고

는 개인은 1990년 6월21일까지 다음 사
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
주택개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
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
여부와 그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
자의 성명)·주소·전화번호

